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90
----------	------

제안년월일 : 2005. 10. 27.

제 안 자 : 의회 · 행정위원장

□ 제안경위

- 2005.10.25 이하연 의원외 1인이 발의한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의회 · 행정위원회에 접수되어 2005.10.25 제1차 의회 · 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 2005.10.27 제3차 의회 · 행정위원회에 다시 상정,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 의결되어 동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함.

□ 제안이유

- 2005. 1. 5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행자부로부터 통보받은 시세 조례 표준조례안을 2005. 5. 4 제127회 임시회에서 전년도 부과징수액과 재정수급 전망 등을 감안하여 의결한 바 있음
- 그러나, 일부지역 아파트의 재산세가 전년도 대비 30~40% 급등 하였다고 주장하며 주민 18,433명으로부터 세금감면 및 소급 적용 등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2005. 8.17일 의회에 접수되어 제130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결과 청원인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이유 있다고 판단하고 청원서를 채택하여 시로 이송 하였음

- 안산시로부터 법률적 소급적용 불가, 그리고 시재정 상황 및 행정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특별대책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주민청원 사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조속히 의회차원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골자

- 현행 조례 제16조(세율) 3호(주택) 나목에서 규정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50%로 경감함.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

나. 예산조치 : 비예산

다. 시 의견조회 : 2005. 10. 13.

라. 기타

1) 신·구 조문대비표 : 붙임

2) 관계법령(발췌)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목 이외의 주택

< 과세 표준 >

4,000만원 이하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세율 >

1,000분의 0.75

3만원 + 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2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세율) 재산세의 적용세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세율) 재산세의 적용세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주택	3. 주택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u>나. 가목 이외의 주택</u>	<u>나. 가목 이외의 주택</u>
<u><과세표준 ></u>	<u><세율></u>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u>6만원+4,000만원</u> <u>초과금액의 1,000분의 3</u>
1억원 초과	<u>24만원+1억원</u> <u>초과금액의 1,000분의 5</u>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생략)	5. (현행과 같음)